

현재 용도 신청서소유자가 한 명인 구획의 농지 분류

[RCW 84.34항](#)

카운티

카운티 감정인에게 제출

과세 분류 지역 :

구획 번호:

Assessor Use Only(감정인 전용)

Application approved

Application denied

All of parcel (land only)

Portion of parcel (land only)

Home site approved

Home site denied

Date owner notified:

Fee returned: Yes No Date:

Assessor/Deputy signature:

APPEAL: A denial of an application for classification as farm and agricultural land may be appealed to the County Board of Equalization.

소유자 정보

이름:

도로명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이메일:

1. 법적 설명

	Sec:	
	Twp:	
	Rge:	

2. 면적

작물:		작물 유형:	
관개 설비된 면적:			
건지 면적:			
가축:		가축 유형:	
원예:		원예 활동 설명:	

다음 장에 계속

본 서류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360-705-6705번으로 전화하세요. 텔레타이프(TTY) 사용자는 711번으로 전화해 WA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장 건물 (온실 포함):		경작한 목초지인가요?	예 아니요
주택:			
승마 용도:		승마 용도 유형:	
수목지역:		수목지역을 가축의 방목/ 축사로 사용하나요?	예 아니요
기타:		기타 설명:	
총 면적:			

3.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있는 경우, 구획의 토지를 설명하세요.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하세요.
4. 이 구획이 현재 용도 외의 다른 용도가 허가된 임대/계약 대상인가요?
예 아니요
예라고 답한 경우 자세히 기재:
5.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각 토지 구획의 현재 용도를 설명하세요.
6.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각 토지 구획의 현재 건물(주택, 농장 건물, 직원 주택, 등)을 설명하세요.

주택이 해당 토지에 있는 경우, 이 주택은 농장 운영자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입니까?

예 아니요

예라고 답한 경우, 농업 목적의 농지 사용 또는 운영에 주택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7. 이 신청서의 대상인 토지의 주 용도가 원예인 경우,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세요.
 - a. 다른 재배자에게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작물을 판매하나요? 예 아니요
예라고 답한 경우, 원예용 토지 중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작물의 저장 및 관리에 사용하는 면적은 얼마인가요?
 - b. 작물을 토양에서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면적은 얼마인가요?
 - c. 작물을 컨테이너에서 재배하는 데 사용하는 면적은 얼마인가요?
컨테이너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면적 중, 몇 퍼센트의 토지가 포장되었나요?
 - d. 원예용 토지가 5에이커 미만인가요? 예 아니요
예라고 답한 경우, 해당 면적 중 몇 퍼센트가 현장 소매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열려 있나요?
8. 가축(유형), 작물, 건초 재배지, 목초지, 황무지, 수목지 등, 각 소유지 구역의 현재 용도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소유지 지도를 첨부하세요.
가능하다면 토양 품질 및 특성도 지도에 포함하세요. 6번 및 7번 문항에 기재한 건물의 위치도 표시하세요.

9. 20에이커 미만의 구획 신청은 특정 최저 소득 또는 투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Washington 개정법 [Revised Code of Washington, RCW] 84.34.020[2][b], [c], [d] 참조). 해당 토지가 분류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이는 관련 데이터를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최근 5년간의 에이커당 수확량을 기재하세요(부셀, 파운드, 톤 등의 단위).							
최근 5년간의 에이커당 연간 소득을 기재하세요.							
임차 또는 임대한 경우, 최근 5년간의 에이커당 연간 총 임대료를 기재하세요.							
총 작물 또는 단기 윤작 수목의 경우, 올해 및 전년도에 에이커당 평균 투자액을 기재하세요.							

참고: 소유자는 신청 대상인 구획 규모와 무관하게 토지에서 적절한 농업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류된 토지의 사용, 일반 작물의 생산성, 소득 등의 관련 데이터를 감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구획 소유자로서 본인은 토지가 84.34 RCW 조항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추가 세금,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이에 서명합니다. 또한, 본 신청서 및 모든 부속 문서는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소유지 사용에 따른 세금에 대한 동의는 계약이 아니며 입법부가 언제든지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RCW 84.34.070)

정자체 이름:
서명:

날짜:

정자체 이름:
서명:

날짜:

RCW 84.34.035 조항에 따르면 “... 감정인은 부동산의 주세 권한 공개 기록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이러한 승인 고지서[양식 REV 64 0088]를 카운티 감사에 기록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색인

농지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상업 목적의 가축 또는 작물 상품을 주로 생산하거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농무부) 휘하의 Federal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연방자연보호프로그램) 또는 후속 프로그램에 등록된 20에이커 이상의 단일 토지 구획 또는 인접 토지 구획.
2. 주로 농업에 사용되는 5에이커 이상 20에이커 미만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구획 또는 인접 구획.

- 이 장에 따른 분류 신청 날짜로부터 최근 5년 중 3년간 매해 농업으로 에이커당 \$200 이상에 상응하는 총 소득이 발생한 구획.
- 올해 또는 전년도에 에이커당 \$100 이상에 상응하는 7년 내 수확 예정인 작물 및 이러한 작물 생산에 대해 증명 가능한 투자액이 있는 구획.
- 올해 또는 전년도에 에이커당 \$100 이상에 상응하는 15년 내에 수확 예정인 단기 윤작 수목 및 이러한 작물의 생산에 대해 증명 가능한 투자액이 있는 구획.

3. 이 장에 따른 분류 신청 날짜로부터 최근 5년 중 3년간 매해 \$1,500 이상의 총 소득이 발생한 주로 농업에 사용하는 5에이커 미만의 토지 구획 또는 인접 토지 구획.

또한 농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5에이커의 인접하지 않은(이 경우, 맞닿지/ 붙어있지 않다는 의미) 구획이지만 토지에서 수행되는 농사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획.
- 농업 사용에 적합한 부수적 용도로서, 분류된 토지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 및 농산물을 생산하는 토지와 더불어 그러한 농산물의 생산, 처리 또는 판매에 필요한 부속물이 있는 토지.
- 마구간, 훈련, 승마, 치료, 교육, 쇼, 사육을 위한 방목 등의 비용이 청구되는 승마 관련 활동에 주로 사용되는 토지.
- 농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지 또는 직원 주택이 위치한 토지로서, 농지가 RCW 84.34.020(2) (a)에 따라 분류되었거나 거주지 또는 주택이 분류된 구획 내 혹은 인접한 곳에 있거나 주택이 농업용으로 분류된 토지의 사용에 중요한 경우.

- 구조물 여부와 무관하게 상업적 원예에 주로 사용되는 토지. 소매 목적으로 다른 재배자에게서 구매한 작물의 보관, 관리, 판매에 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거나 컨테이너 내 작물 재배가 주 용도인 경우, 20% 이상이 포장된 토지. 토지의 주 용도가 컨테이너 내 작물 재배이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5에이커 미만인 경우, 현장 소매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 25% 이상인 토지는 분류 대상이 아닙니다.

분류 박탈에 따른 추가 세금, 이자, 벌금 안내

1. 분류 박탈 시 추가 세금, 이자, 벌금이 부과되며, 박탈 후 30일 내 또는 감정인이 새 소유자가 서명한 Notice of Continuance(연기 통지서)를 승인한 경우가 아닌 한 판매 또는 이전 후 30일 내에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 이자, 벌금은 다음의 총합입니다.

(a) “농지”로서 지불한 재산세와 최근 7년간 중 토지가 농지로 분류되지 않은 기간에 지불해야 했던 재산세의 차액.

(b) 재산세 연체에 부과되는 법정 요율과 동일하게 부과되는 (a) 차액에 대한 이자.

(c) RCW 84.34.070(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유자의 철회 요청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류된 토지가 다른 용도로 판매, 이전, 사용된 경우 추가 세금 및 이자에 20%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2. (1)에서 규정한 추가 세금, 이자, 벌금은 박탈이 오직 다음의 사유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a) Washington 주 내의 다른 토지를 대가로 정부 기관에 이전.

(b) 토지수용권의 행사를 통한 취득 또는 토지수용권의 행사에 앞서 그러한 권리가 있는 주체에게 판매, 이전.

(c) 홍수, 태풍, 지진, 산불 또는 토지 소유주가 해당 자산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아니한 기타 재난.

(d) Washington 주 기관 또는 해당 토지가 토지의 현재 용도를 허가하지 않는 카운티, 시에 있는 경우 카운티, 시의 공적 조치.

(e) 해당 토지가 RCW 84.36.020에 따른 재산세 면제 자격이 있는 경우 교회로의 토지 이전.

(f) RCW 84.34.210 및 64.04.130에 따른 자격을 갖춘 주정부 기관 또는 기관 또는 조직이 해당 조항에 열거된 목적으로 재산 지분을 취득한 경우 (RCW 84.34.108[6][f] 참조).

(g) RCW 84.34.020(2)(f)에 따라 농지로 분류된 토지의 박탈(주택 용지)

(h) 토지가 면제 대상이 되는 법정 면제 제정 및 분류에서 토지를 박탈해 달라는 소유주의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의 토지 분류 박탈.

(i) RCW 76.13.120에 따른 수변림 지역권의 형성, 판매, 이전.

(j) RCW 76.09.040에 따른 비피압 유로 변경 지역 내 또는 멸종 위협 또는 위기종의 주요 서식지가 포함된 사적 삼림지의 환경보호 지역권 형성, 판매, 이전.

(k) 토지가 삼림지 분류로 감정 및 평가되었거나 84.33 RCW에 따라 삼림지로 지정되었거나 1993년 이래 계속 이 장에 따라 분류된 경우, 토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소유자의 사망 후 2년 내 토지의 판매 또는 이전.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일자는 기준일자로 사용됩니다 워싱턴 행정법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WAC] 458-30-300[5][k] 참조).

(l) 소유자의 과실이 아닌 오류로 인해 토지가 분류된 것이 발견된 경우.